

개수 : ‘개수’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 등*을 수선하거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** 등을 설치·수선하는 것 (취득세 2%)

- * 레저시설, 저장시설, 도크시설, 접안시설, 도관시설, 급수·배수시설, 에너지 공급시설 등
** 승강기, 발전시설(20KW이상), 열공급시설, 중앙조절식 에어컨, 금고, 교환시설 등

★공동주택 개수 취득세 비과세

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단,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9호[대수선의 정의]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
지방세법9조(비과세)1항⑥호 및 시행령 제12조의2(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)

★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신고

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주택에 설치시 대수선은 과세 그 외 개수사항은 비과세(신규설치는 '취득' 수선하는 경우 '개수')

* **공동주택**에 총전시설 설치시 **취득세 면세점 기준 적용**-아파트소유자의 면적비율에 따라 취득세납부하는 것
이므로 세대별 취득가액이 면세점에 부합하는지 확인.
(2020.3.9. 행안부 적용요령통보)

③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 시 취득세 면세점 기준 적용

-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서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종전 유권해석례^{*}에 따라 면세점 여부 판단 및 과세

⇒ 공동주택 세대별 소유자의 공용면적 소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, 세대별 취득가액

이 면세점 기준(50만원)에 부합하는지를 판단

- * (지방세운영과-3555, 2010.8.13.) 아파트 단지 일부 동 승강기 개수시 전체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개수로 볼 수 없고, 해당 동 아파트 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공용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